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1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4. 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4. 3.

다. 상정일자: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4.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종임】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자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법 규정 불부합 조문 정비(안 제3조의2제2항제4호)

- 토지보상법에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의제규정이 없음 ⇒ 삭제

※ 조례 입법 경제성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에 반복 기재 불요

나. 조문 나열 순서 오기 정정(안 제10조제5항제1호가목)

- 가목 두 번 중복 기재 ⇒ 가·나 순차 구분하여 반영

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제81조(변상금) 개정

사항 반영 <개정 2023. 8. 22.>

-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금액별 상이 ⇒ 연12회 이내로 통일(안 제31조)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100만원 ⇒ 50만원(안 제88조제1항제2호)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4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제2항제4호는 공유재산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3조의2제2항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 토지보상법에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 한다”는 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 없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각 개별법령에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조례에 반복 기재는 불필요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0조제5항제1호는 “가”목이 두 번 중복 기재 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 “가”목을 “나”목으로 수정하여 조문 나열 순서 오기를 정정하였음.
- 안 제31조와 안 제88조제1항제2호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¹⁾ 및 제81조(변상금)²⁾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조정하였음
- 안 제31조는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하여 금액별 분납 횟수를 차등(2~4회)하여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분납 횟수를 연 12회 이내로 통일하였음.
- 그리고, 안 제88조제1항제2호는 변상금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하였음.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1)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2)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 아울러,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2023.8.22.)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부분 분할 납부 횟수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법체계 균형을 맞추고 국민에게 상위법과 마포구 조례의 불일치로 인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0. 12. 22.>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22.>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